

의안번호	2209971
의 퇴 인	이만희 의원
회 답 일	2025.4.30.
추계번호	25E2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 → (개정안) ①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 15%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금액 인상 및 기부금 한도 삭제: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 100/110, 2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 30%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

-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시에는 15%(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30%를 세액공제 하면서 해당 기부금의 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한도를 폐지한 것은 이만희 의

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개별 납세자의 기부 증가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에는 2건, 2022년에는 6건, 2023년에는 4건 등이 지정
 -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879.3억원이며, 총 기부 건수 77.4만건의 91.7%(70.9만건)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하고 있어, 세액공제 한도 인상시 기부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나 이를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650.6억원이며, 총 기부건수(52.6만건)의 83.9%(44.1만건)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함

[표 1]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금액별 건수

(단위: 건, %)

구 분	합계	1만원 미만	1만~10만 미만	10만원	10만~100만 미만	100만~500만 미만	500만원
24년 건수	773,711	9,033	40,984	709,296	9,245	3,709	1,444
비율(%)	100.00	1.17	5.30	91.67	1.19	0.48	0.19
23년 건수	526,305	39,572	29,627	441,291	8,882	4,881	2,052
비율(%)	100.00	7.52	5.63	83.85	1.69	0.93	0.39

-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향액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5.1.1.부터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